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가단1110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4,505원 및 그 중 11,194,688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5.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573,3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9,573,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D 주식회사는 2015. 2. 23.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7. 9. 27.,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5. 12. 31.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9093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0. 28. ‘피고 B은 원고에게 7,576,861원 및 그 중 2,811,526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F 주식회사는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3327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양도로 인하여 G유한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0. ‘피고 B은 G 유한회사에게 4,166,326원 및 그 중 3,968,814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7. 8. G 유한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3) 피고 B은 주식회사 H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원금 11,194,688원을 연체함에 따라 2016. 3. 30.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편입 시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주식회사 H는 2018.

11. 14. I 주식회사에, I 주식회사는 2019. 12. 13. 원고에게 위 특수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0. 2. 4. I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9. 4.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지위에 있던 피고들과 K은 2019.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9.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3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한편 2020. 3. 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말소되었고, 피고 C은 2020. 1. 9.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7,000,000원에 매매한 후 2020. 3. 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N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양수금채권의 2021. 6. 10. 기준 원리금 합계

27,004,505원 및 그 중 원금 11,194,688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 사건 제1, 2, 3 양수금채권이 성립하였고,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3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망인의 생전에 55,014,478원(= 망인이 피고 B에게 입금한 돈 합계 73,922,478원 - 피고 B이 망인에게 입금한 돈 18,908,000원)을 지급받았고, 망인이 2015. 4. 14. L은행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9,870,000원 중 대출 직후 O의 계좌로 입금 및 현금인출된 20,000,000원도 피고 B이 소비하였는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수익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과 K이 있으므로, 그 법정상속분은 각 1/3이 되고,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7,000,000원인 사실, 망인이 피고 B에게 55,014,478원을 사전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5호증의 기재와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 4. 14. L은행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29,87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8,251,0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L은행 대출금 중 O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인출된 20,000,000원을 피고 B이 소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5,014,478원에 대하여만 피고 B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과 피고 B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피고 B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면, 74,587,805원[= 간주상속재산 223,763,415원(= 197,000,000원 - 28,251,063원 + 55,014,478원) × 피고 B의 상속지분 1/3]이고,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19,573,327원(= 74,587,805원 - 55,014,47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C의 수익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고 C을 겁박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처 P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 B에게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한 대금을 상회하는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 B에게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2) 판단

을 제2, 3호증만으로는 피고 B이 P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의 부분인 구체적 상속분 상당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상당액이 19,573,32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 양수금채권의 2021. 6. 10. 기준 원리금은 합계 45,350,850원(= 8,737,587원 + 9,608,758원 + 27,004,505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둘 중 적은 금액인 19,573,327원을 한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573,3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9,573,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레브지붕 18층 아파트

1층 324.76㎡, 2층 내지 18층 각 325.52㎡, 지층 311.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남구 대 5046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8.6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0460.6분의 26.759 분.

